

중국 · 홍콩 · 마카오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

<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>

쪽	현행(~2.28.)	변경(3.1.~)	개정사유
1	I. 공항검역 대응 주요사항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중국·홍콩·마카오 발 입국자 대상 Q-CODE 이용 의무(‘23.1.2.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항공기 탑승 전 Q-CODE에 검역정보 입력하고 QR코드 발급 완료 ◆ 중국 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(‘23.1.5.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(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) * 기타 자세한 사항은 [질병관리청 누리집] → [알림자료] → [공지사항] → ‘중국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FAQ’ 참조 ◆ 중국 발 입국자*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(‘23.1.2.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국 후 1일 이내(도착 익일 이내) PCR검사 완료 후 Q-CODE 누리집에 검사 결과 등록 * Q-CODE 누리집(cov19ent.kdca.go.kr) 접속 → ‘입국 후 검사 등록’ 선택 ◆ 홍콩, 마카오 발 입국자 입국 전 검사 및 Q-CODE 이용 의무(‘23.1.7.~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지참하고 Q-CODE 입력 완료 	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 제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<p>입국 후 검사 의무 해제</p>

쪽	현행(~2.28.)	변경(3.1.~)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<p>① 중국 출발 입국자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입국 전 음성확인서 (1.5.~)</th> <th>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(1.2.~)</th> <th>확진자 격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내국인·장기체류 외국인(본인 입증)</td> <td>제출(적합)</td> <td>보건소</td> <td>▲자택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</td> </tr> <tr> <td>단기체류외국인</td> <td>제출(적합)</td> <td>▲공항검사센터(비용 자부담) ▲검역소*</td> <td>▲자택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(검역소) 공항검사센터 미운영 시, 검역소 검사</p> <p>② 홍콩, 마카오 출발 입국자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입국 전 음성확인서 (1.7.~)</th> <th>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*</th> <th>확진자 격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내국인·장기체류 외국인(본인 입증)</td> <td>제출(적합)</td> <td>보건소</td> <td>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 입소 시설</td> </tr> <tr> <td>단기체류외국인</td> <td>제출(적합)</td> <td>▲공항검사센터 (비용 자부담) ▲의료기관 (비용 자부담)</td> <td>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 입소 시설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입국 전 음성확인서 (1.5.~)	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(1.2.~)	확진자 격리	내국인·장기체류 외국인(본인 입증)	제출(적합)	보건소	▲자택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	단기체류외국인	제출(적합)	▲공항검사센터(비용 자부담) ▲검역소*	▲자택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	구 분	입국 전 음성확인서 (1.7.~)	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*	확진자 격리	내국인·장기체류 외국인(본인 입증)	제출(적합)	보건소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 입소 시설	단기체류외국인	제출(적합)	▲공항검사센터 (비용 자부담) ▲의료기관 (비용 자부담)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 입소 시설	<p>① 중국·홍콩·마카오 출발 입국자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입국 전 음성확인서</th> <th>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</th> <th>확진자 격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내국인·장기체류 외국인(본인 입증)</td> <td>제출(적합)</td> <td>보건소</td> <td>▲자택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</td> </tr> <tr> <td>단기체류외국인</td> <td>제출(적합)</td> <td>공항검사센터 의료기관 (비용 자부담)</td> <td>▲자택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삭 제)</p> <p>(삭 제)</p>	구 분	입국 전 음성확인서	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	확진자 격리	내국인·장기체류 외국인(본인 입증)	제출(적합)	보건소	▲자택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	단기체류외국인	제출(적합)	공항검사센터 의료기관 (비용 자부담)	▲자택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	
	구 분	입국 전 음성확인서 (1.5.~)	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(1.2.~)	확진자 격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내국인·장기체류 외국인(본인 입증)	제출(적합)	보건소	▲자택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단기체류외국인	제출(적합)	▲공항검사센터(비용 자부담) ▲검역소*	▲자택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입국 전 음성확인서 (1.7.~)	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*	확진자 격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내국인·장기체류 외국인(본인 입증)	제출(적합)	보건소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 입소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단기체류외국인	제출(적합)	▲공항검사센터 (비용 자부담) ▲의료기관 (비용 자부담)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 입소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입국 전 음성확인서	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	확진자 격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내국인·장기체류 외국인(본인 입증)	제출(적합)	보건소	▲자택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단기체류외국인	제출(적합)	공항검사센터 의료기관 (비용 자부담)	▲자택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쪽	현행(~2.28.)	변경(3.1.~)	개정사유								
	<p>㉔ 일반 국가(중국, 홍콩, 마카오 외 국가) 출발 입국자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9 197 730 564"> <tr> <td data-bbox="79 197 236 264">구 분</td> <td data-bbox="236 197 507 264">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*</td> <td data-bbox="507 197 730 264">확진자 격리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79 300 236 416">내국인/ 장기체류 외국인 (본인 입증)</td> <td data-bbox="236 300 507 416">보건소</td> <td data-bbox="507 300 730 564" rowspan="2">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 입소시설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79 452 236 564">단기체류 외국인</td> <td data-bbox="236 452 507 564">▲공항검사센터 (비용 자부담) ▲의료기관(비용 자부담)</td> </tr> </table> <p>* 단 7일 이내 중국 체류·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(검사장소)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: 보건소 / 단기체류외국인: 공항검사센터 또는 검역소</p>	구 분	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*	확진자 격리	내국인/ 장기체류 외국인 (본인 입증)	보건소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 입소시설	단기체류 외국인	▲공항검사센터 (비용 자부담) ▲의료기관(비용 자부담)	<p>㉔ 일반 국가(중국, 홍콩, 마카오 외 국가) 출발 입국자 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 제)</p>	
구 분	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*	확진자 격리									
내국인/ 장기체류 외국인 (본인 입증)	보건소	▲자택, ▲병원, ▲재택격리 입소시설									
단기체류 외국인	▲공항검사센터 (비용 자부담) ▲의료기관(비용 자부담)										

쪽	현행(~2.28.)	변경(3.1.~)	개정사유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기본사항) 개인별 체온측정(발열감시카메라, 고막체온계 등),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 및 QR코드 스캔을 통한 검역 조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안내사항) 중국·홍콩·마카오 출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안내문 배포[참고1] *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○ (입국후 검사) PCR검사 및 검사 결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(Q-CODE) 누리집에 등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) 중국 출발 입국자 및 7일 이내 중국 체류·방문 이력이 있는 입국자 · (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)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검사 후,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· (단기체류외국인)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 후, 공항 내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 결과 대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가 없는 공항검역소에서는 채취한 검체를 관할 질병 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(필요시 수탁기관 활용) * 국내거소가 확실한 보호자(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)가 있는 만6세 미만 아동과 그 동행자(단기체류외국인)의 경우, 보호자 거주지에서 검사결과 대기 가능 - (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) 홍콩·마카오 출발 및 일반 국가(중국 외) 출발 입국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)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 · (단기체류외국인)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(비용 본인부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기본사항) 개인별 체온측정(발열감시카메라, 고막체온계 등),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 및 QR코드 스캔을 통한 검역 조사 (삭 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○ (입국 후 검사)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 14-2판의 기준에 따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3일 이내 자율 검사)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·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3일 이내 보건소에서 무료 자율 검사(PCR) 가능 	

쪽	현행(~2.28.)	변경(3.1.~)	개정사유
4	나. 음성확인서 확인 ○ (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) - (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)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실시(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)	나. 음성확인서 확인 ○ (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) - (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) 검역소에서 PCR검사 실시(검체 채취 후 자차 등 이용하여 자택대기 가능)	
5	다. 기타 사항 ○ (검역소) 부득이하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입력하지 못한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검역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 및 입력 확인 후 검역 완료 - Q-CODE 이용자 검역정보는 검역 완료시, 지자체로 자동 연계 *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 ○ (지자체)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정보 확인 가능 * (지자체 확인방법)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→ 해외입국자 관리	다. 기타 사항 ○ (검역소) 부득이하게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입력하지 못한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검역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 및 입력 확인 후 검역 완료 - 입국 후 검사 의무가 있는 2월 28일까지의 입국자 정보는 지자체로 연계되며 한시적으로 확인 가능(~3.14일)하고, 3월 1일 이후 입국자 정보는 지자체 연계하지 않음. ○ (지자체)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, 입국 후 검사의무가 있는 중국발 입국자 정보를 확인하여 검사 관리 * (지자체 확인방법)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→ 해외입국자 관리	
IV. 항만검역 대응 주요사항			
6	◆ 중국 출항 하선자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(23. 1. 2~) * 홍콩·마카오 출항 하선자는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 ◆ 중국·홍콩·마카오 승선 선원 국내 하선 시, 사전 PCR검사 의무(23. 1. 13.~) - 승선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(미제출자 국내 하선 제한)	(삭 제) ◆ 중국·홍콩·마카오 승선자(내국인 포함) 국내 하선 시,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(23.1.13.~) (현행과 같음)	

쪽	현행(~2.28.)	변경(3.1.~)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
7	① 중국 출항 하선자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하선 전 음성확인서 (1.13.~)</th> <th>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</th> <th>확진자 격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상륙하선자 전원 (내국인·장기체류·외국인 구분 없음)</td> <td>검역소 제출(적합)</td> <td>검역소 (선박 내 대기 또는 검역소 주실 격리)</td> <td>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(음성확인서) 중국에서 승선하여 7일 이내 국내 하선 시, 음성확인서 제출 ※ 단, 중국·홍콩·마카오에서 승선하지 않은 경우, 음성확인서 미제출</p>	구 분	하선 전 음성확인서 (1.13.~)	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	확진자 격리	상륙하선자 전원 (내국인·장기체류·외국인 구분 없음)	검역소 제출(적합)	검역소 (선박 내 대기 또는 검역소 주실 격리)	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	① 중국·홍콩·마카오 출항 하선자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하선 전 음성확인서 (1.13.~)</th> <th>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</th> <th>확진자 격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</td> <td>검역소 제출(적합)</td> <td>보건소</td> <td>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</td> </tr> <tr> <td>단기체류외국인</td> <td>검역소 제출(적합)</td> <td>의료기관 (비용 자부담)</td> <td>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(음성확인서) 중국·홍콩·마카오에서 승선하여 7일 이내 국내 하선 시 음성확인서 제출 (삭 제)</p>	구 분	하선 전 음성확인서 (1.13.~)	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	확진자 격리	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	검역소 제출(적합)	보건소	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	단기체류외국인	검역소 제출(적합)	의료기관 (비용 자부담)	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	
구 분	하선 전 음성확인서 (1.13.~)	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	확진자 격리																				
상륙하선자 전원 (내국인·장기체류·외국인 구분 없음)	검역소 제출(적합)	검역소 (선박 내 대기 또는 검역소 주실 격리)	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																				
구 분	하선 전 음성확인서 (1.13.~)	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	확진자 격리																				
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	검역소 제출(적합)	보건소	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																				
단기체류외국인	검역소 제출(적합)	의료기관 (비용 자부담)	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																				
	② 홍콩·마카오 출항 하선자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하선 전 음성확인서 (1.13.~)</th> <th>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</th> <th>확진자 격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내국인·장기체류·외국인(본인 입증)</td> <td>검역소 제출(적합)</td> <td>보건소</td> <td>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</td> </tr> <tr> <td>단기체류외국인</td> <td>검역소 제출(적합)</td> <td>▲의료기관 (비용 자부담)</td> <td>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(음성확인서) 홍콩·마카오에서 승선하여 7일 이내 국내 하선 시 음성확인서 제출 ※ 단, 중국·홍콩·마카오에서 승선하지 않은 경우, 음성확인서 미제출</p>	구 분	하선 전 음성확인서 (1.13.~)	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	확진자 격리	내국인·장기체류·외국인(본인 입증)	검역소 제출(적합)	보건소	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	단기체류외국인	검역소 제출(적합)	▲의료기관 (비용 자부담)	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	(삭 제)									
구 분	하선 전 음성확인서 (1.13.~)	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	확진자 격리																				
내국인·장기체류·외국인(본인 입증)	검역소 제출(적합)	보건소	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																				
단기체류외국인	검역소 제출(적합)	▲의료기관 (비용 자부담)	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																				

쪽	현행(~2.28.)	변경(3.1.~)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
	<p>① 일반 국가(중국, 홍콩, 마카오 외 국가) 출항 하선자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 <td>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(권고)</td> <td>확진자 격리</td> </tr> <tr> <td>내국인(장기체류외국인 본인 입증)</td> <td>보건소</td> <td>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</td> </tr> <tr> <td>단기체류외국인</td> <td>의료기관(비용 자부담)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구 분	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(권고)	확진자 격리	내국인(장기체류외국인 본인 입증)	보건소	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	단기체류외국인	의료기관(비용 자부담)		<p>② 일반 국가(중국, 홍콩, 마카오 외 국가) 출항 하선자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 분</td> <td>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</td> <td>확진자 격리</td> </tr> <tr> <td>내국인(장기체류외국인)</td> <td>보건소</td> <td>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</td> </tr> <tr> <td>단기체류외국인</td> <td>의료기관(비용 자부담)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구 분	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	확진자 격리	내국인(장기체류외국인)	보건소	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	단기체류외국인	의료기관(비용 자부담)		
구 분	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(권고)	확진자 격리																			
내국인(장기체류외국인 본인 입증)	보건소	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																			
단기체류외국인	의료기관(비용 자부담)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	확진자 격리																			
내국인(장기체류외국인)	보건소	▲자택, ▲병원 ▲재택격리 입소시설 ▲선박 내 격리																			
단기체류외국인	의료기관(비용 자부담)																				
8	<p>□ 하선자 검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입국 후 검사) 하선자 전원 PCR 검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) 중국 출항 하선자 전원(내·외국인 구분 없음) - (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(권고)) 홍콩·마카오 및 일반국가(중국)외 출항 하선자 - (내국인(장기체류외국인)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 - (단기체류외국인)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(비용 본인부담) <p>※ 하선을 하지 않더라도 그 외 검역소장이 PCR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포함 (단, 보안 구역 내 작업자는 제외)</p> <p>※ 응급으로 긴급 병원 후송 경우, 병원에서 실시하는 PCR 검사로 대체 가능</p>	<p>□ 하선 절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검역정보 확인) 개인별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여 인적사항 확인하는 것을 원칙 * 선사나 해운대리점을 통해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 ○ (증상분류)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체크 결과 증상 분류 ○ (입국 후 검사) 코로나19 검역대응지침 14-2판의 기준에 따름 ※ (3일 이내 자율 검사)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(장기체류 외국인)은 입국 3일 이내 보건소에서 무료 자율 검사(PCR) 가능 																			

쪽	현행(~2.28.)	변경(3.1.~)	개정사유
	<p>※ (참고) 하선 유형에 따른 구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입국자) 하선자 중 선원 교대 등의 사유로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는 내·외국인 · (상륙허가자) 하선자 중 상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· (재승선내국인)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했다가 선박으로 복귀하는 내국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검역확인증) 음성 판정 시, 검사 대상자에게 검역확인증(참고4) 발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하선자는 발급받은 검역확인증을 출입국 입국심사시 제시 * 발급 번호, 대상자 소속 선박명, 대상자 성명, 발급일 확인 ○ (일일상황 보고)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 		
-	<p>참고1 중국·홍콩·마카오 출발 입국자 안내문</p>	(삭 제)	
-	<p>참고2 중국 發 코로나19 검사면제 신청서 등</p> <p>(유의사항) 3. 모든 중국 發 해외입국자는 예외없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.</p>	<p>참고2 중국 發 코로나19 검사면제 신청서 등</p> <p>(삭 제)</p>	
12	<p><서식-2> 중국 發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면제 확인서</p> <p>(주의사항) - 모든 중국 發 해외입국자는 예외없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.</p>	(삭 제)	

쪽	현행(~2.28.)	변경(3.1.~)	개정사유
15	<p>참고3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이용 안내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행일 : 2023. 1. 7. ○ (입국 후) 입국 후 PCR검사받고 (이하생략) ○ (입력순서) 입국 후 PCR 검사결과 등록 	<p>참고3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이용 안내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행일 : 2023. 3. 1. ○ (삭 제) ○ (입력순서) 입국 후 검역관에게 제출 	
-	<p>참고4 검역 확인증(항만 검역소)</p> <p>참고5 검역 확인증 관리 대상(항만 검역소)</p>	<p>(삭 제)</p> <p>(삭 제)</p>	
16	중국·홍콩·마카오궤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FAQ('23.1.21.)	중국·홍콩·마카오궤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FAQ('23.3.1.)	
18	<p>11. 영유아 경우에도 “음성확인서” 제출 의무가 있는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 영·유아는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(만 6세 이상은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) ○ 다만,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는 예외없이 실시 	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 제)</p>	
20	<p>16.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(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)는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,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, 예외없이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(PCR검사) 실시 	<p>(삭 제)</p>	

쪽	현행(~2.28.)	변경(3.1.~)	개정사유
-	<p>18. 영유아의 경우 공항검사 후 “공항 내 대기장소 대기” 의무가 있는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 거소가 확실한 보호자(내국인·장기체류 외국인)가 있어 재택격리 전환 가능한 만 6세 미만 아동과 그 동행자(단기체류외국인)는 공항 검사 후 보호자* 거주지에서 검사결과 대기 가능 * 국내 거소지가 확실한 보호자(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)인 경우만 가능(신분증 지참) ○ 이동시 대중교통은 이용 불가하며, 본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만 이용 가능 ※ 기타 상세사항은 검역소 또는 검역관의 지시에 따름 	<p>(삭 제)</p>	